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9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99892 손해배상(기)
원 고 ○○○○○ ○○○○○ ○○○○○
미합중국 ○○○○주 44114-1782 ○○○○○ 이스트 9번가 1360
스위트 ○○○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김상훈, 한명수
피 고 주식회사 ○○○ ○○○
서울 강남구 ○○동 4-○○ ○○○○빌딩 8층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임성우, 박환성
변 론 종 결 2008. 5. 1.
판 결 선 고 2008. 5. 2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 Group(이하 '○○○'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2006. 5. 17. ○○○ 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2007. 4. 25. ○○○ 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5. 17. ○○○ 와 2006. 6. 1.부터 2010. 12. 31.까지 ○○○ 와 관련된 일체의 수익 사업을 개발, 협의, 조직 및 관리하고, 그 대가로 ○○○ 의 아이스 스케이팅 수입의 15%, 상품관련 수입 및 방송, 강연, 저작 및 영화수입의 2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07. 4. 12. 피고의 대표이사 이○○은 ○○○ Korea 지

사장으로 ○○○ 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을 만나서, 피고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3년간 매년 소요되는 5억 원을 부담하되 ○○○ 의 연간 수입금에서 이를 우선 상환 받고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25%의 수수료를 받아 원고와 피고가 반분하고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 부분적인 양도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며칠 후인 2007. 4. 19. ○○○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은 2007. 4. 19. 이○○을 만나서 ○○○ 측과 3자 대면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24. 이○○, 이○○, ○○○ 의 모 박○○○가 함께 공동매니지먼트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다음 날인 2007. 4. 25. 피고는 ○○○ 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속적 에이전트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협상을 요청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의 권리를 해함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 에게 접근하여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제3자 채권침해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한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0,000원 및 원고의 신용 및 명예,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

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며칠 후 ○○○ 와 새로운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 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 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를 해할 의사로 ○○○ 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호 _____

판사 이재혁 _____

판사 박은주 _____